

신구조문대비표
「관세법 시행령」

관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908호, 2022. 9. 15., 일부개정]	관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931호, 2022. 10. 4., 타법개정]
<p>제155조의2(국제항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</p> <p>가. 공항의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</p> <p>나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55조의2(국제항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</p> <p>가. 공항의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9조의7(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 <p>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259조의7(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)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, 제8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</p> <p>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</p>